
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8. 25.

발의자 : 황주홍 · 윤영일 · 이찬열
김삼화 · 김종희 · 유성엽
이용주 · 정인화 · 이동섭
주승용 · 김관영 · 최경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일부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(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)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음.

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용도 중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, 농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각 기금에 대한 전출 근거는 세출항목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이에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금 및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).
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 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

7.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」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특별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

②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」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특별

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) ① (생 략)</p> <p>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6. · 7. (생 략)</u></p>	<p>제5조(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<u>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</p> <p>7. 「<u>농어업재해보험법</u>」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</p> <p>8. · 9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</p>